

주류업계에 대한 금융실명제의 영향

I. 머리말



이 명 진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경제학박사>

1993년 8월 12일 金融實名制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이의 成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부작용없이 借名 및 假名預金의 실명전환이 순조롭게 이어졌다 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借名의 實名轉換率이 예상을 밑돌고 있고 大型金融資產 保有者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中小零細商人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金融實名制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實名制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실명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方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류업계의 장단기 경영전략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金融實名制의 실시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정부의 보완대책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金融實名制로 인한 전반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金融市場과 實物市場의 景氣動向을 살펴보았다.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분석은 酒類產業을 포함한 全產業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에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金融實名制가 특히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目 次 ■

- I. 머리말
- II. 금융실명제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 2.1 금융실명제의 실시배경
 - 2.2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
 - 2.3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 III. 금융실명제 후 경기동향과 파급효과
 - 3.1 금융시장 동향
 - 3.2 실물시장 동향
 - 3.3 중소기업
 - 3.4 전반적 파급 효과
- IV. 주류업계에 대한 영향과 대응
 - 4.1 무자료거래 관행
 - 4.2 한계세액공제제도
 - 4.3 세제개편

II. 金融實名制의 基本方向과 主要內容

2.1. 金融實名制의 實施背景

정부는 金融去來의 正常化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8월 12일 金融實名制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과거 與小野大政局에서도 실시를 보류하며 10년이 넘도록 시행에 차질을 빚어오던 金融實名制가 大統領의 결단에 의하여 실시됨으로서 文民政府가 내세우는 新經濟構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非實名去來慣行은 1961년 7월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예금·적금은 물론 주식이나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의 가명·무기명 거래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不法으로 조성된 자금이나 부정한 돈이 假名預金口座를 이용한 돈세탁과정을 거침으로써 자금추적이 어려워지고 大型金融事故, 不法·不正事件·稅金脫漏를 양산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국민간 불신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낳기도하였다.

1980년대초 ‘이철·장영자 사건’으로 알려진 大型金融事故가 되풀이된 이후 고조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2년 7월 3일 ‘사채양성화와 관련한 실명거래제 실시와 종합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金融實名制 논의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조치의 주요내용은 첫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法人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實名去來制를 1983년 7월부터 실시하며, 둘째, 綜合所得稅率을 76.5%에서 50%로 경감하되 분리과세하던 이자·배당 등 모든 금융자산소득을 綜合所得稅에 합산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融實名制 실시에 반대하는 세력에 놀려 이제도의 실시가 유보되고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金融實名制 실시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1988년 12월 5일 改閣으로 趙淳副總理가 등장하고 1989년 4월 11일 財務部 奉下에 ‘금융실명거래 준비단’이 발족되는 등 정부는 金融實名制

實施意志를 강력하게 보였으나 이의 실시는 다시 유보되었다.

시행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지 10년이 지난 후 金泳三大統領에 의하여 전격적으로 실시된 金融實名制는 세금부담의 형평, 비합리적 금융관행의 일소, 지하경제의 척결을 통한 經濟正義確立이라는 當爲性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두차례의 실패경험을 갖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에도 일종의 金融實名制인 Green Card제가 198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도록 명문화 되었으나 수용태세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이자소득은 계속 분리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金融實名制의 정착에 대하여 示唆하는 바가 크다.

2.2. 金融實名制의 主要內容

정부는 金融實名制를 ‘긴급명령’에 의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실명법’보완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등으로 경제내 부작용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명령’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 긴급명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또한 利子·配當所得 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19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997년 5월 첫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다만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실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金融實名制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실명(實地名義)의 使用義務

銀行·證券社·保險社·短資社·農協 등의 單位組合, 郵遞局,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명을 사용한다.

2.2.2 既存 非實名金融資產에 대한 措置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非實名으로

확인된 資產은 인출을 금지한다. 1993년 10월 12일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에 따라 실시일로부터 매년 10% 씩 최고 60%(중여세 최고세율 수준)의 過徵金을 부과하고 비실명이자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差等課稅率(현행 64.5%→96.75%)을 인상 적용한다.

經　過　日　數	徵收率
義務期間經過後 實施日로부터 1年間	10%
實施日로부터 1年以上 2年未滿	20%
實施日로부터 2年以上 3年未滿	30%
實施日로부터 3年以上 4年未滿	40%
實施日로부터 4年以上 5年未滿	50%
實施日로부터 5年經過後	60%

※ 過徵金을 당해 금융자산에서 원천징수 함.

2.2.3 金融去來 情報의 祕密保障強化

금융기관은 名義人の 書面上 要求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된다.

- 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法官의 令狀에 의한 요구시
- ② 租稅法律에 의한 조사시
- ③ 재무부장관 · 은행감독원장 · 증권감독원장 · 보험감독원장이 감독 · 검사의 필요에 의한 요구시
- ④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제공시
-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정보제공시

2.3 金融實名制 補完對策

이번 金融實名制가 긴급명령을 통하여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의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실명거래라는 慣行에 익숙해져온 경제내의

各主體들이 새로운 제도적 장치에 익숙하게 적응하기 까지의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資金難 緩和對策, 證券市場 安定化對策, 不動產投機對策, 資金의 海外流出防止對策 등 예상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2.3.1 中小企業 等의 資金難 緩和對策

金融實名制 시행초기에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거래실적의 露出을 꺼리는 사채시장의 위축인 바 기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緊急運轉資金, 緊急經營安定資金 支援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擔保가 부족해서 은행이용이 어려운 零細中小企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 국면은행 등을 통해 간소한 신용보증절차만으로 5천만원(영세상인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금고의 어음할인도 확대하여 실명제 실시이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담보부족 등의 隘路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증가능규모를 현재의 2배범위 이내로 확대 운용하고 있다.

2.3.2 證券市場 安定化 對策

증권시장의 투자심리안정을 위하여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실시초기의 시장불안정에 대비하여 기관투자가의 매수확대 등 단기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投信社의 주식매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장형 수익증권(약 2조원)의 기간만료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하였다. 즉 90년에 설정된 保障型收益證券의 만기가 93년 8월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수익률이 보장수익률 33%의 절반인 15%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투신사에 대한 2,200억원의 보상액을 마련하였다.

※ 保 障 型 收 益 證 券	총설정액 : 약2조원
	만기도록 : 8, 9월 - 4600억원
	10,11월 - 1조2천억원
	12월이후 - 3,400억원
	보장형수익률에 의한 판매시의 투 신사 예상보상액 : 2,200억원

<中小 및 零細小企業 支援對策>

- 緊急運轉資金 3,000억원 추가지원
 - 기배정자금(3,000억원) 소진이후 지원
 - 16일부터 1개월내 방출
- 地方中小資金 追加支援 檢討
 - 이미 830억원 배정
- 零細小企業(종업원, 20인미만) 緊急經營安定資金 4천억원을 지원(4천억원 추가지원 방침)
 -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비적격여음의 경 우에도 전성어음인 경우 할인
 - 제조업은 업체당 5,000만원, 영세상인은 3,000만원까지
 - 담보나 제3자 연대보증없이 신용보증서 보증
 - 신용보증기관 대위변제 발생시 재정에서 보전
- 信用管理基金 어음再買入 限度 擴大하고 信用金庫 에서流通어음害弓|許容
 - 1,200억원→2,400억원
 - 향후 1개월간
-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 및 控除事業基金 財政出捐 (1,220억원) 早期執行
- 中小企業 少額納品貸金 現金済誘導
- 中小企業 및 個人事業者 稅金減免 來年以後에도 持續
- 附加稅 課稅特例者 一般課稅 轉換時 限界稅額控除 制度 導入
 - 세금증가분 일정을 감면으로 세금부담 증가방지
- 限界稅額控除制度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一般課稅者 의 경우 衡平性의 原則에 따라 所得稅率弓|下方針

2.3.3 不動產 등 實物投機對策

비실명으로 거래되던 金融資產이 노출을 피하여 不動產 등 實物資產으로 투기성 흐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投機嫌疑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지정하고 國稅廳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도 확대하였다.

<土地去來許可對象 規模>

用	途	地	域	面	積
토지계획 구역	전용주거 · 상업지역			100평초과	
	준공업지역			181평초과	
	일반주거 · 준주거 및 지정 이 없는 지역			82평초과	
	전용공업 ·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299평초과 100평초과	
비도시 계획구역	농지			302평초과	
	임야			605평초과	
	농지 · 임야 이외			151평초과	

* 상기 면적이하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계약체결후 신고(단순통보형식)해야 함.

부동산 이외의 實物投機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면 投機嫌疑者 및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자 2백50명을 선발 세무조사하고 1천여명의 투기대책반을 운용, 부동산가격과 거래동향을 감시하며, 實物 · 資金屬을 취급하는 2천여 유명업소에 대하여 8월 16일부터 실태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中堅畫家 50여명을 선별하여 특별관리하기로 하였으나 書畫 및 骨董品에 대한 讓渡所得稅는 1992년 정기국회에서 과세시기를 1996년 1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투기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서화 및 골동품이 화랑이나 골동품상에서 개인에게 판매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취득한 소장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2.3.4 資金의 海外流出防止 對策

商去來 또는 個人送金을 위장하여 자금이 해외로 도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회 3천달러 이상 년간 1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자 명단을 특별관리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贈與性 送金을 제외한 유학생체재비, 장기해외체재자 경비, 기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인정하는 거래에 대한 대외지급은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업의 경우 수출입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사무소 등의 經費를 過多計上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자금유출의 가능성 있는 바 상대국 국세청과 협력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특히 ①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입거래나 ② 로열티, 기술용역비, 수수료 등으로 송금되는 거래 ③ 과거와 대비하여 현격하게 고가로 수입되는 거래 등에 대하여 정밀추적조사하기로 하였다.

III. 金融實名制 後 景氣動向과 波及效果

金融實名制는 장기적으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信用社會基盤을 구축하고 불법적 금융거래를 척결하여 금융자본의 公定去來秩序를 확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地下經濟를 陽性化시켜 불로소득의 경로를 차단하고 사회부조리를 제거하며 세부담의 공평성, 세수증대, 투기성거래의 양성화 등을 통하여 市場安定機能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透明性을 높여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함양할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准租稅的 負擔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러한 肯定的 效果는 金融實名制가 무리없이 정착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負의 效果도 동시에 예상되고 있다.

실명제실시 3개월이 지난 지금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무리없이 초기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한편 一角에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부도기업이 늘어나고 통화팽창으로 인한 物價不安이 지적되기도 한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경기동향과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金融市場 動向

金融實名制 실시이후 정부는 자금시장의 경색, 중소기업의 부도증가,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通貨를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실명제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공급의 신축적 운용은 일단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通貨膨脹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내년도 韓國經濟에 負擔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실명제실시 후의 자금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總通貨共給을 살펴보자. 총통화증가율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올해 4월초부터 연초 목표치보다 약 2% 포인트 上廻하는 월평균 18.6% 수준이었으나 8월에는 金融實名制 早期定着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공급계획에 따라 20.3%까지 통화증가율이 상승하였다. 이에따라 總通貨共給量은 금년 8월이 1조4,600억원으로 작년동기의 2,000억원에 비하여 1조2,600억원이나 늘어났다. 또한 총통화증가율(평잔)은 작년동기 대비하여 9월중 24.8%, 10월에는 20.8%로 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중 총통화는 작년에 비하여 1조원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통화가 넉넉하게 공급됨에 따라 실명제 실시직후 잠시 동요를 보였던 市中實勢金利는 1일 콜금리의 경우 9월말 추석연휴에 연18% 선을 넘어섰던 것을 제외하고는 3개월동안 연 11~12% 수준에 머물렀다. 3년만기 會社債流通受益率의 경우에도 실명제 실시로 채권매수세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연 14.5% 수준까지 올랐으나 10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 연 125% 수준까지 내려있다.

與受信 動向을 보면 은행예금은 실명제 직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9월부터는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약 1조9천억원이 증가하여 正常化되고 있으며, 은행여신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여수신도 9월중의 충격을 벗어나 9월부터는 정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명제 실시 이후 10월말까지 銀行金錢信託은 3조4천억원, 단기수신은 2조원, 그리고 신용금고수신은 3천억원 증가하였으며, 投信社도 공사채형을 중심으로 10월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證券市場도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11월에는 종합주가지수가 800선을 회복하며 올 최고수준을 시현하였으며 고객예탁금은 3조원에 육박하면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3.2 實物市場動向

實物經濟動向을 보면 먼저 성장 및 산업생산의 경우 成長率은 지난해 4/4분기에 2.8%를 기록하고 금년들어서는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3.4%와 4.2%를 시현하는 등 개선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연간으로는 당초(6.0%)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진 5% 수준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같이 전망치가 낮게修正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金融梗塞에 따른 설비투자의 지연, 실명전환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 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침체되며,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원노출을 우려하여 都小賣去來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을 보면 8월중 3.3%, 9월 6.8%, 10월 2.7% 증가에 그치고 11월은 2.1%로 전망되고 있으며, 제조업 가동율도 8월중 76.0%에 낮아졌다가 9월 이후 79% 증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景氣回復勢가 遲延되고 있다.

輸出入은 상거래 위축에 따른 일부 중소기업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9월 중 수출은 6.4% 증가하고 수입은 1.3% 증가에 그쳐 貿易收支의 改善趨勢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9월중에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2억3천만원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하였다.

물가도 도소매 거래등의 위축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으나, 內需의 전반적 부진으로 상쇄되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물가 상승은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며 20개 기본생필품 가격은 계속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3.3 中小企業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제의 영향은 兩極化 現象을 보이면서 중견 중소기업은 무자료거래가 대부분 사라지고 전전한 유통질서가 정착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들은 建設景氣 不況과 共給過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資料露出에 어려움이 많아 아직까지 일부는 無資料去來를 계속하는 실정이며 不渡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市中 資金事情을 반영하는 부도율 추이를 보면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추석을 전후하여 資金融路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는 陰陽이 較差하고 있는데 資金難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으로는 構造的 陰陽產業과 景氣沈滯業種(종이컵, 의류, 이불솜, 타월, 염료 등), 私債依存度가 특히 높은 업종(라이터, 제유, 위생용지, 배합사료, 면방, 안경테 등), 재래식 유통 등 무자료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종이상자, 문구도매, 밸브, 전선, 비누세제 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실명제의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업종은 경기가 好況이었거나 경기변화에 둔감한 업종(판유리가공, 상업용 조리기계, 조미료, 문방구 등), 官納비중이 높은 업종(철강, 산업용 중전기, 스포츠 용구, 產業爐 등) 등이 것으로 나타났다.

3.4 全般的 波及效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시장은 당초의

충격을 벗어나서 正常化 段階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려되었던 預金引出事態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현금통화도 설명제 실시이후에는 급증하였으나 10월 이후 還收되고 있으며, 은행예금도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投信을 제외한 제2금융권 수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株式市場은 초기의 急落勢를 지나 활황국면에 있으며 금리는 오히려 설명제 실시 이전보다 낮은 下向 安定勢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인의 경우에도 초기의 시중 자금사정 악화와 去來梗塞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조원 이상의 집중적인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補完措置가 뒤따름으로써 점차 안정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설명제 실시는 우려했던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初期定着에 成功했다고 판단된다.

IV. 酒類業界에 대한 影響과 對應

金融實名制 실시로 인하여 주류업계에 파급되는 영향은 다음 세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酒類都賣商 등 주류유통업계는 설명거래로 인하여 無資料去來 慣行이 위축되게 되었다. 둘째, 酒類小賣業者는 거래실적이 노출되어 稅負擔이 증가되는데 이를 輕減시킬 목적으로 限界稅額控除制度가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조세구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셋째, 酒類生產業者는 實名制補完 對策으로 실시되는 세제개편에 의하여 稅率引下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명제 실시로 인하여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無資料去來 慣行

주류유통시장의 문제점의 대표적인 것은 덤픽인데 이의 요인을 살펴보면 주류도매업자의 自己資本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일부 都賣場의 경우 제조업체에 예속되어 제조업체가 自社製品을 도매장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배정하거나, 인기주류 공급시 비인기주류를

끼워파는 행위 등 非正常去來가 뒤따르게 된다. 資金壓迫과 在庫處理를 위하여 도매업체는 이들 酒類를 덤픽시장으로 유통시키게 되며 여기에서 무자료거래가 발생한다.

그러나 설명제 실시로 인하여 資金의 逆追跡이 가능해지고 稅源이 露出됨에 따라 무자료거래 관행은 위축되게 되며 주류유통업계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덤픽시장은 제조업체가 市場支配者로서 자본이 취약한 도매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기인하는 바 이와같은 流通秩序의 歪曲을 시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주류도매업 組織化・協同化 사업을 들 수 있다. 조직화・협동화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기존 도매장을 통합하여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과 선진국의 경우 消費者保護의 次元에서 주류 판매를 전문매장에서만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류 도매창구를 기존의 都賣場, 슈퍼체인, 農協・水協 등에서 전문도매장으로 一元化하여 이를 통하여 유통되는 물량을 大量化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無資料去來 慣行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주류유통업의 영역을 정책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유통에 관계하는 經濟主體들 사이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隨行機能 또는 役割의 專門化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附加價值의 均衡配分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流通金融制度의 확충 또한 요청되는 사항인데 유통업계에 대한 금융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정책적 고려에서 무시되거나 우선순위가 맞게 취급되어 왔으며 그결과 유통기능은 相對的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한채 악순환을 되풀이 하였다. 특히 현금화가 쉬운 유통업계의 在庫資產을 담보로 하기 보다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자산의 관행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2 限界稅額控除制度

정부는 설명제 발표와 함께 私債市場凍結로 資

金難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중 영세유통업자를 위하여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매출 3천 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課稅特例者(매출의 2%만 부가세 징수)가 실명제로 거래실적이 공개되면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의 10%를 부가세징수)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稅負擔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계세액공제방식은 매출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세금 경감폭을 점차 축소해 가는 것인데 그 계산방법은 아래표와 같다.

<限界控除稅額 計算方法>

$$\text{공제세액} = (A - B) \times \text{경감율}$$

$$\text{납부세액} = A - \text{공제세액}$$

$$A = \text{일반과세자로 전환후 규정세액(부가가치의 } 10\%)$$

$$B = \text{매출액 } \times 2\%$$

$$\text{경감률} : \frac{6,000\text{만원}^* - \text{매출액}}{4\text{천}2\text{백만원}}$$

* 과세기간(6개월)의 공제상환액으로 1년기준으로 하면 1억2천만원인 경우

零細酒類都賣業者들은 실명거래에 따라 課標가 상승하게 되었으나 한계세액공제제도 실시로 말미암아 과도한 稅金上昇 壓力으로 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3 稅制改編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하여 실명제 실시에 따라 課稅資料와 稅源이 양성화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업과 관련있는 법인세율을 보면 기업의 競爭力強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法人稅의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을 각각 2%포인트($20\% \rightarrow 18\%$, $34\% \rightarrow 32\%$)인하하였다. 특히 金融實名制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

소제조업에 대하여 法人稅・所得稅의 20%를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하였다.

그외에도 기업의 財務構造 改善을 유도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마인드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기업관련 稅制를 보완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株主의 配當所得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기부담한 세액의 1/3만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었으나,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의 전액을 공제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二重課稅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 非上場法人이 그 이익을 주주에게 적정하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超過留保所得稅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초과유보소득세의 공제수준을 上向調整하고 세율을 15%로 인하하였다.

셋째, 기업의 資金負擔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附加價值稅 신고기한과 종복되어 있는 법인세의 중간예납기한을 현재보다 30일 연장하였다.

넷째, 접대비의 損費 認定限度를 현실화하고 일부 損益의 인식시기와 비용의 기간배분 등에 대하여 企業會計基準과 달리 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주류생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法人稅率引下와 함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2重課稅가 조정됨으로써 기업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超過留保에 대한 소득세가 완화되었으므로 社內留保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자체조달하고 財務構造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법인세 중간 예납기한이 연장되어 기업의 借入金지급이자의 損費要件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자금의 社外流出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租稅摩擦의 소지가 있었던 접대비 소비한도가 현실화되어 세무조정에 따른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